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김선민·신장식・박은정

김준형 • 차규근 • 황운하

이해민 · 김재원 · 서왕진

조 국・강경숙・정춘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 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생 략)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없다.

-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 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 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 ② (현행과 같음)